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 (박주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556

발의연월일: 2025. 4. 3.

발 의 자: 박주민·김문수·남인순

이용우 • 민병덕 • 김영환

김남근 • 염태영 • 임미애

이재정 • 박민규 • 이강일

의원(12인)

제안이유

이른바 '전략적 봉쇄소송'(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, 약칭 'SLAPP')은 통상 시민의 공적 참여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는 자(정부, 단체 및 개인)가 시민의 공적 참여를 위축시키기위한 수단으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함. 이는 재판청구권을 남용하여 시민의 청원권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목적과 효과를 가져오는 소송으로서 미국 등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에서 그 제한을 위한 입법, 사법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.

2000년대 이후 국내에서도 이러한 소송이 계속되고 있음. 국내에서 주로 문제되는 소송 유형은 국가가 공적 이슈에 대하여 진행된 집회 ·시위 주최자 및 참가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유형, 내부 · 공익신고자에 대하여 조직 차원에서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유형, 그리고 사용자가 노조의 파업 등 노동기본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

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청구를 제기하는 유형이 있음. 이러한 소송이 제한 없이 허용된다면 시위·집회참가자, 공익신고자, 노동자 및 노동조합 등이 자신의 권리와 공익을위해 행동하기 전에 스스로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음. 이를 제한하려면 이러한 목적의 소송을 유형화하고 가압류청구 등에 대한 방어권 보장 등 절차적 제한 역시 요구됨. 또한 형식적인 승소가능성 외에 소송의 '괴롭힘' 목적이 확인될 경우에 조기종결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임.

이에 이러한 실질적 목적을 가진 소송을 '괴롭힘 소송'으로 유형화하여 그에 대한 「민사소송법」 및 「민사조정법」의 특례를 규정하려는 취지임.

주요내용

- 가. 기존의 '전략적 봉쇄소송' 개념을 우리 현실에 맞게 '괴롭힘소송'으로 정의하고 보호대상을 언론·출판의 자유, 집회·결사의 자유, 근로자의 기본권 및 공익신고자의 권익으로 구체화함(안 제1조 및 제2조).
- 나. 괴롭힘소송을 조기에 각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를 위한 별도의 심 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(안 제3조).
- 다. 괴롭힘소송에 대하여 피고는 별도로 반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5조).

- 라. 본안청구 외에 가압류신청이 괴롭힘소송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염 려가 있는 경우에 가압류절차의 특칙을 두어 가압류 남용을 억제하 고자 함(안 제6조).
- 마. 괴롭힘소송에 대하여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 부담에 관한 특칙을 두어 괴롭힘소송의 남용을 억제하고자 함(안 제7조).

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

제1조(목적) 이 법은 「대한민국헌법」에 따라 보장된 언론·출판의 자유, 집회·결사의 자유 또는 근로자의 기본권의 정당한 행사를 위축시키는 괴롭힘소송의 제기를 금지하고 이를 통하여 공적인 중요성을 갖는 사안에 대한 국민의 지속적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위하여 괴롭힘소송에 관하여 「민사소송법」 및 「민사집행법」에 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괴롭힘소송"이란 공적 중요성을 갖는 사안에 관하여 「대한민국헌법」에 따라 보장된 언론·출판의 자유, 집회·결사의 자유 또는 근로자의 기본권을 행사한 개인, 노동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단체를 피고로 하여 기본권 행사 및 그와 관련된 행위를 제한하거나 중단하도록 할 목적으로 제기하는 민사소송을 말한다.
- 2. "공적 중요성을 갖는 사안에 관하여 헌법상 보장된 언론·출판의 자유, 집회·결사의 자유 또는 근로자의 기본권을 행사"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

가. 공공기관에 의한 공적 절차에서 행하여진 진술 또는 제출된

서면

- 나. 공공기관에 의한 공적 절차에서 심리, 심의, 검토되는 사안에 관하여 행하여진 진술 또는 서면
- 다. 노동조합의 단체교섭, 쟁의행위,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
- 라. 공적 중요성을 갖는 사안에 관하여 행하여진 진술, 서면 또는 집회에서의 진술, 행위
- 마.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에 따른 공익신고등의 행위
- 3. "공공기관"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.
 - 가. 국회, 법원, 헌법재판소, 중앙선거관리위원회, 중앙행정기관(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) 및 그 소속기관, 지방자치단체
- 나.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3조(괴롭힘소송에 대한 각하신청 및 재판) ① 법원은 제기된 소송이 괴롭힘소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. 다만, 괴롭힘소송을 제기한 자가 승소가능성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소송의 주된 목적이 상대방에 대한 보복 또는 괴롭히기로 인정되거나 소제기로 인한 기본권 행사 의 현저한 위축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각하할 수 있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소송의 각하 여부에 관한 재판은 별도의 심문기일을 정하여 결정으로 한다.

-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른 재판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로 하여금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「민사소송법」 제147조제1항을 준용한다.
- ⑤ 법원은 제3항에 따른 결정을 할 때까지 증거조사를 포함한 본안의 소송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.
- 제4조(즉시항고) 제3조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 또는 각하신청의 기각결 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
- 제5조(반소) ① 피고는 원고의 소송이 괴롭힘소송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「민사소송법」 제269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반소에 대한 판결은 제3조제1항에 따른 각하판결과 함께 선고되어야 한다.
- 제6조(가압류에 대한 특칙) ① 법원은 가압류신청에 기재된 당사자 및 피보전권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「민사집행법」 제28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.
 - 1. 국가,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제2조제3호의 공공기관 및 기관의 장이 개인, 노동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단체가 행 한 제2조제2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

배상채권

- 2.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, 쟁의행위,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 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채권
- 3. 그 밖에 제2조제1호에 따른 괴롭힘소송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사건
- ② 채무자는 제1항에 따른 심문기일 전까지 가압류신청이 괴롭힘소송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재판은 제3조에서 정한절차에 따른다.
- 제7조(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에 관한 특칙) 법원은 제3조, 제5조, 또는 제6조의 경우에 직권으로 소송비용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소송비용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피고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 전액을 포함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적용례)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기된 소송부터 적용한다.